|  |  |  |
| --- | --- | --- |
| **공상행정관리기관 집법감독규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 제78호  <공상행정관리기관 집법감독규정>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장마오(張茅)  2015년 9월 15일  **제1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의 행정집법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일상화 감독 제도를 보완하며 각 항 공상행정관리 법률·법규·규장이 정확하게 실시되도록 보장하고 엄격하고 규범적이며 문명한 집법을 촉진시키며 공민·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처벌법>, <행정허가법> 등 법률·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집법감독이라 함은 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이 하급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대하여, 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본 기관 및 그 파출기구, 집법인력의 행정집법 행위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평의, 독촉, 시정 등 활동을 지칭한다.  이 규정에서 칭하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는 공상행정관리 직책을 이행하는 시장감독관리부서를 포함한다.  **제3조** 각 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집법감독 제도를 수립 및 보완하고 집법감독 절차를 개선하며 집법감독 수단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집법감독 수단과 방식을 적극 모색하며 각 항 공상행정관리 행정집법 행위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각 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의 법제기구는 집법감독을 주관하는 업무부서로서 본 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인솔하에 집법감독 업무를 계획, 조율, 지도 및 실시한다.  각 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의 기타 관련 기구는 그 직책규정에 따라 관련 분야의 집법감독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야 한다.  **제4조** 집법감독은 집법에 대한 감독과 집법 촉진 결합, 착오 시정과 업무 개선 결합의 원칙을 준수하고 유법필의(有法必依), 집법필엄(執法必嚴), 위법필구(違法必究)의 방침을 고수함으로써 의법행정(依法行政)을 보장해야 한다.  **제5조** 집법감독의 범위는 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공상행정관리 법률·법규·규장과 규범성문건의 집행 상황;  (2) 규범성문건의 제정절차와 내용의 합법성;  (3) 행정처벌·행정허가·행정강제 등 구체행정행위의 합법성과 적당성;  (4) 행정집법 과정에 부작위, 직권남용, 직무태만, 월권집법 등 행위 존재 여부;  (5) 행정집법 공시 상황;  (6) 행정집법 책임제 실행 상황;  (7) 감독검사가 필요한 기타 상황.  **제6조** 집법감독은 주로 다음 각 호의 방식을 취한다.  (1) 법률·법규·규장 실시상황 보고제도 시행;  (2) 규범성문건 합법성 심사제도 시행;  (3) 행정처벌 사건 심의·공청제도 시행; (  (4) 공상행정관리집법증 관리제도 시행;  (5) 행정재심사제도 시행;  (6) 행정집법 사건기록 평가검사제도 시행;  (7) 특별집법검사제도 시행;  (8) 법치건설 평가제도 시행;  (9) 행정집법 평의·평가제도 시행;  (10) 집법감독 서면고지제도 시행;  (11) 행정집법 과실 책임추궁제도 시행;  (12) 각 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취하기로 결정한 기타 방식.  **제7조** 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업무 수요에 근거하여 하급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서면형식으로 관련 공상행정관리 법률법규규장의 실시 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공상행정기관이 공민·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규범성문건을 제정하는 경우 합법성 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합법성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공표해서는 아니된다.  합법성 심사는 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사한다.  (1) 본 기관의 법정(法定) 직권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법률·법규·규장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3) 위법으로 행정처벌·해정허가·행정강제 등 사항을 설정하였는지 여부;  (4) 위법으로 공민·법인과 기타 조직의 권리를 감소시커나 해하는 규범 또는 공민·법인과 기타 조직의 의무를 증가시키는 규범을 설정하였는지 여부;  (5)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여부;  (6) 제정 절차가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  (7) 본 기관의 상이한 규범성문건이 동일 사항에 대한 규정이 서로 충돌되는지 여부;  (8) 심사가 필요한 기타 내용.  각 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그가 제정한 규범성문건을 그의 포털사이트에 공표해야 한다. 하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반년을 주기로 규범성문건의 제정·공표·정리 등 상황을 직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9조** 각 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행정처벌 사건 심의제도를 시행해야 하며 행정처벌 사건에서의 법제기구의 감독기능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사건 심의는 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본 기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당사자의 기본 상황이 명확한지 여부;  (3)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한지 여부와 증거가 확실한지 여부;  (4) 사건의 성격에 대한 판단이 정확한지 여부;  (5) 법률·법규·규장의 적용이 정확한지 여부;  (6)처벌이 적당한지 여부와 자유재량권의 행사가 정확한지 여부;  (7) 사건 처리 절차가 합법적인지 여부.  **제10조** 각 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행정처벌 사건 공청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행정처벌 공청회는 법제기구가 계획하고 실시한다.  각 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1) 명령, 영업 중단 명령, 광고업무 중단 명령 등;  (2) 영업집조 취소·몰수 또는 압수, 광고발표등기증 취소, 상표등록 취소, 특수표지 등기 취소 등;  (3) 공민에게 3,000위안 이상의 과태료 부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게 3만위안 이상의 과태료 부과;  (4) 공민·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게 제(3)호에 규정한 액수 이상의 불법소득·불법재물을 몰수하는 행정처벌 부과  (5)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기타 행정처벌.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인민정부가 전 항 제(3)호, 제(4)호에 열거한 과태료·몰수 금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각 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행정재심사, 행정응소 및 행정배상 사건에 대한 통계,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하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정기적으로 통계·분석보고서를 직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12조** 각 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연도별로 본 기관과 하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의 행정처벌, 행정허가 등 행정집법 사건기록에 대한 평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행정처벌 사건기록의 평가검사는 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주체가 합법적인지 여부;  (2) 인정한 사실관계가 명확한지 여부와 증거가 확실한지 여부;  (3) 법률근거의 적용이 정확한지 여부;  (4)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와 법제기구의 심사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5) 자유재량권의 운용이 적당한지 여부;  (6) 처벌과 납부 분리제를 집행하였는지 여부;  (7) 범죄에 연루된 사건을 적시에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였는지 여부;  (8) 사건 처리기한 요구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9) 사건 처리문서가 전면적·완전적인지 여부;  (10) 사건기록의 작성, 제작, 제본이 규범적인지 여부;  (11) 평가검사가 필요한 기타 내용.  행정허가 사건기록의 평가검사는 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①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주체가 합법적인지 여부;  ② 행정허가 항목이 법률근거가 있는지 여부;  ③ 신청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여부와 법정(法定) 형식에 부합되는지 여부;  ④ 법률근거의 적용이 정확한지 여부;  ⑤ 접수·심사 절차가 합법적인지 여부;  ⑥ 법정(法定) 기한내에 허가 또는 불허의 결정을 내렸는지 여부;  ⑦ 법에 따라 고지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⑧ 사건기록의 작성, 제작, 제본이 규범적인지 여부;  ⑨ 평가검사가 필요한 기타 내용.  사건기록 평가검사는 사건기록 추출검사, 당사자 방문, 타지역간 상호검사 등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 중, 행정행위가 인민법원에 의해 취소, 변경, 위법확인 또는 무효의 판정을 받은 경우 반드시 그 행정집법 사건기록 전부에 대해 평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검사 상황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통보해야 한다.  **제13조** 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하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의 행정처벌 정보 공시 상황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야 하며 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일반 절차를 적용한 모든 행정처벌 사건을 공시하였는지 여부;  (2) <기업정보 공시 잠정조례>와 <공상행정관리기관의 행정처벌 정보 공시 잠정규정>에 따라 적시에 정확하고 완전하게 행정처벌 정보를 공시하였는지 여부;  (3) 규정에 따라 기업공시 정보에 대한 추출검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4) 행정처벌 정보 공시제도 등 내부 평가 및 관리제도를 구축·보완하였는지 여부;  (5) 감독이 필요한 기타 내용.  **제14조** 각 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업무 수요에 근거하여 신규로 제정·개정한 공상행정관리 법률·법규·규장의 실시 상황 또는 행정집법의 대표적인 핫이슈, 문제점에 대한 특별집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특별집법검사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의 각 관련기구가 계획하고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법제기구가 단독으로 또는 관련 기구와 공동으로 계획하고 실시할 수 있다.  특별집법검사는 서면보고, 조사연구 좌담회, 현장검사, 사건기록 추출검사, 온라인 추출검사, 설문조사, 비밀조사 등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특별집법검사 상황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통보해야 한다.  **제15조** 각 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행정처벌 자유재량권 기준 제도를 보완하여 행정처벌 자유재량권 표준을 세부화·수량화 하고 정보화 수단을 이용하여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의 행사를 규범화해야 한다.  각 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사건 심의, 공청, 행정재심사, 사건기록 평가검사 등 형식을 통하여 본 기관과 하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의 행정처벌 자유재량권 행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16조** 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하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처리한 다지역적이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중대한 사건에 대해 감독을 실시할 권한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 책임자의 승인하에 집법감독통보서를 발송하여 사건처리 상황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급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하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집법감독통보서에 규정한 기한내에 사건처리 상황을 서면으로 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17조** 각 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본 기관과 그 파출기구, 집법인력이 법정(法定) 직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정(法定) 직책의 이행이 법에 위배되거나 적당하지 아니함을 발견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시정해야 한다.  **제18조** 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하급 공상행정관리기관 및 그 집법인력이 법정(法定) 직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정(法定) 직책의 이행이 법에 위배되거나 적당하지 아니함을 발견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시정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하급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집법감독통보서를 발송하여 적시에 시정하도록 독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집법감독통보서에 규정한 기한내에 집행해야 하며 집행완료 후 10일내에 집행결과를 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19조** 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하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집법 업무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문제점 또는 지역적 위험을 발견한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 책임자의 승인하에 하급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집법감독통보서를 발송하여 업무개선 의견과 건의를 제시할 수 있다.  하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집법감독통보서에 규정한 기한내에 관련 상황을 서면으로 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20조** 각 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처벌과 납부 분리제도 및 수입과 지출 별도관리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하며 요금·과태료·몰수 수입을 해당 부서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또는 변형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엄겸히 금지한다.  **제21조** 각 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행정집법 및 형사사법 연결 매커니즘을 보완해야 하고 사건 이송 표준과 절차를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공안기관, 검찰기관, 심판기관의 정보공유·사건통보·사건이송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제22조** 하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그의 행정집법 활동이 지역보호주의 등의 방해와 간섭을 받은 경우 직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할 수 있다. 직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조율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 정부에 해당 상황을 통보하거나 감독처리하거나 직접 조사처리하는 등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 공상행정관리집법증 관리, 행정처벌 사건 심의·공청, 행정재심사, 행정배상, 법치건설 평가, 행정집법 평의·평가, 행정집법 과실 책임추궁 등 집법감독 방식은 관련 법률·법규·규장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특별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24조** 하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집법감독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집법감독 결정을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경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통보비평하거나 시정을 명하며 이와 더불어 권한이 있는 기관에 책임이 있는 주관인력과 관련 책임인력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건의할 수 있다.  행정집법인력이 집법감독 결정을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경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비평교육, 통보비평, 직장외 교육훈련, 집법 직위에서 전출 등 조치를 취함과 더불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25조** 성·자치구·직할시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이 규정을 근거로 현지의 실정과 결부시켜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6조**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9년 12월 8일 국가공상행정관리국령 제92호로 공표된 <공상행정관리가관 집법감독 잠정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 |  | **工商行政管理机关执法监督规定**  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令第78号  　　《工商行政管理机关执法监督规定》已经中华人民共和国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局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5年12月1日起施行。  　　　　　　　　　　　　　　　　　局长 张茅  2015年9月15日  **第一条** 为了加强对工商行政管理机关行政执法行为的监督，完善常态化监督制度，保证各项工商行政管理法律、法规、规章的正确实施，促进严格规范公正文明执法，保护公民、法人和其他组织的合法权益，根据《行政处罚法》《行政许可法》等法律、行政法规，制定本规定。  **第二条** 本规定所称执法监督，是指上级工商行政管理机关对下级工商行政管理机关，各级工商行政管理机关对本机关及其派出机构、执法人员的行政执法行为进行检查、评议、督促、纠正等活动。  　　本规定所称工商行政管理机关，包括履行工商行政管理职责的市场监督管理部门。  **第三条** 各级工商行政管理机关应当建立健全执法监督制度，完善执法监督程序，强化执法监督手段，积极探索执法监督的有效途径和方式，加强对各项工商行政管理行政执法行为的监督制约。  　　各级工商行政管理机关法制机构是主管执法监督的工作部门，在本级工商行政管理机关的领导下，负责组织、协调、指导和实施执法监督工作。  　　各级工商行政管理机关其他有关机构应当依照其职责规定，做好相关领域的执法监督工作。  **第四条** 执法监督应当遵循监督执法与促进执法相结合、纠正错误与改进工作相结合，坚持有法必依、执法必严、违法必究，确保依法行政。  **第五条** 执法监督的范围主要有：  　　（一）工商行政管理法律、法规、规章和规范性文件执行情况；  　　（二）规范性文件的制定程序和内容是否合法；  　　（三）行政处罚、行政许可、行政强制等具体行政行为是否合法、适当；  　　（四）行政执法中是否存在不作为、滥用职权、玩忽职守、越权执法等行为；  　　（五）行政执法公示情况；  　　（六）行政执法责任制落实情况；  　　（七）其他应当监督检查的情况。  **第六条** 执法监督主要采取以下方式进行：  　　（一）实行法律、法规、规章实施情况报告制度；  （二）实行规范性文件合法性审查制度  （三）实行行政处罚案件核审、听证制度  （四）实行工商行政管理执法证管理制度；  　　（五）实行行政复议制度；  　　（六）实行行政执法案卷评查制度；  　　（七）实行专项执法检查制度；  　　（八）实行法治建设评价制度；  　　（九）实行行政执法评议考核制度；  　　（十）实行执法监督函告制度；  　　（十一）实行行政执法过错责任追究制度；  　　（十二）各级工商行政管理机关决定采取的其他方式。  **第七条** 上级工商行政管理机关根据工作需要，可以要求下级工商行政管理机关以书面形式报告有关工商行政管理法律、法规、规章的实施情况。  **第八条** 工商行政管理机关制定对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的权利义务产生直接影响的规范性文件应当进行合法性审查，未经合法性审查的，不得公布。  　　合法性审查主要审查下列内容：  　　（一）是否属于本机关法定职权范围；  　　（二）是否与法律、法规、规章的规定相抵触；  　　（三）是否违法设定行政处罚、行政许可、行政强制等事项；  　　（四）是否违法设定减损公民、法人和其他组织权利或者增加其义务的规范；  　　（五）是否已经公开征求意见；  　　（六）制定程序是否符合有关规定；  　　（七）本机关不同规范性文件对同一事项的规定是否冲突；  　　（八）其他需要审查的内容。  　　各级工商行政管理机关应当将其制定的规范性文件在门户网站公布。下级工商行政管理机关应当每半年将规范性文件制定、公布、清理等情况报送上一级工商行政管理机关。  **第九条** 各级工商行政管理机关应当实行行政处罚案件核审制度，充分发挥法制机构在行政处罚案件中的监督作用。  　　案件核审的主要内容包括：  　　（一）本机关对所办案件是否具有管辖权；  （二）当事人的基本情况是否清楚；  （三）案件事实是否清楚，证据是否确凿；  （四）案件定性是否准确；  （五）适用法律、法规、规章是否正确；  （六）处罚是否适当，自由裁量权行使是否正确；  （七）案件办理程序是否合法。  **第十条** 各级工商行政管理机关应当实行行政处罚案件听证制度。行政处罚听证由法制机构具体组织实施。  　　各级工商行政管理机关作出下列行政处罚决定之前，应当告知当事人有要求举行听证的权利：  　　（一）责令停业整顿、责令停止营业、责令停止广告业务等；  　　（二）吊销、收缴或者扣缴营业执照、吊销广告发布登记证件、撤销商标注册、撤销特殊标志登记等；  　　（三）对公民处以三千元以上、对法人或者其他组织处以三万元以上罚款；  　　（四）对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作出没收违法所得和非法财物达到第（三）项所列数额的行政处罚；  　　（五）法律、法规规定可以要求听证的其他行政处罚。  　　各省、自治区、直辖市人大常委会或者人民政府对前款第（三）项、第（四）项所列罚没数额有具体规定的，从其规定。  **第十一条** 各级工商行政管理机关应当对行政复议、行政应诉和行政赔偿案件进行统计、分析。下级工商行政管理机关应当定期向上一级工商行政管理机关报送统计、分析报告。  **第十二条** 各级工商行政管理机关应当每年对本机关和下级工商行政管理机关的行政处罚、行政许可等行政执法案卷进行评查。  　　行政处罚案卷评查的主要内容包括：  　　（一）实施行政处罚的主体是否合法；  　　（二）认定的事实是否清楚，证据是否确凿；  　　（三）适用法律依据是否准确；  　　（四）程序是否正当，是否经过法制机构核审；  　　（五）自由裁量权运用是否适当；  　　（六）是否执行罚缴分离；  　　（七）涉嫌犯罪的案件是否及时移送司法机关；  　　（八）是否符合案件办理期限要求；  　　（九）案件办理文书是否全面、完整；  　　（十）案卷的书写、制作、装订是否规范；  　　（十一）需要评查的其他内容。  　　行政许可案卷评查的主要内容包括：  　　（一）实施行政许可的主体是否合法；  　　（二）行政许可项目是否有法律依据；  　　（三）申请材料是否齐全、是否符合法定形式；  　　（四）适用法律依据是否准确；  　　（五）受理、审查程序是否合法；  　　（六）是否在法定期限内作出准予或者不予许可的决定；  　　（七）是否依法履行告知义务；  　　（八）案卷的书写、制作、装订是否规范；  　　（九）需要评查的其他内容。  　　案卷评查可以采取抽查案卷、案件回访、异地互查等形式进行。其中，行政行为被人民法院撤销、变更、确认违法或者无效的，其行政执法案卷必须全部进行评查。评查情况应当在一定范围内进行通报。  **第十三条** 上级工商行政管理机关应当对下级工商行政管理机关开展行政处罚信息公示的情况进行监督，主要内容包括：  　　（一）是否公示所有适用一般程序的行政处罚案件；  　　（二）是否按照《企业信息公示暂行条例》和《工商行政管理行政处罚信息公示暂行规定》及时、准确、完整公示行政处罚信息；  　　（三）是否按照规定抽查企业公示信息；  　　（四）是否建立健全行政处罚信息公示内部考核和管理制度；  　　（五）其他需要监督的内容。  **第十四条** 各级工商行政管理机关根据工作需要，可以对新制定、修订的工商行政管理法律、法规、规章的实施情况，或者对行政执法中具有普遍性的热点、难点问题组织专项执法检查。  　　专项执法检查由工商行政管理机关各相关机构组织实施，必要时法制机构可以单独或者会同相关机构组织实施。  　　专项执法检查可以采取书面汇报、调研座谈、现场检查、案卷抽查、网络抽查、问卷调查、暗访等形式进行。专项执法检查情况应当在一定范围内通报。  **第十五条** 各级工商行政管理机关应当完善行政处罚自由裁量权基准制度，细化、量化行政处罚自由裁量权标准，运用信息化手段，规范行政处罚自由裁量权行使。  　　各级工商行政管理机关应当通过案件核审、听证、行政复议、案卷评查等形式加强对本机关和下级工商行政管理机关行使行政处罚自由裁量权的监督。  **第十六条** 上级工商行政管理机关有权对下级工商行政管理机关办理的跨区域、具有较大社会影响等重大案件进行监督，必要时经工商行政管理机关负责人批准，可以发出执法监督通知书，要求下级工商行政管理机关就案件办理情况作出说明。  　　下级工商行政管理机关应当在执法监督通知书规定的期限内将案件办理情况书面报告上级工商行政管理机关。  **第十七条** 各级工商行政管理机关发现本机关及其派出机构、执法人员不履行、违法履行或者不当履行法定职责的，应当依据有关规定予以纠正。  **第十八条** 上级工商行政管理机关发现下级工商行政管理机关及其执法人员不履行、违法履行或者不当履行法定职责的，应当依据有关规定提出纠正意见，并可以向下级工商行政管理机关发出执法监督通知书，督促其及时纠正，必要时可以直接作出纠正的决定。  　　下级工商行政管理机关应当在执法监督通知书规定的期限内执行，并于执行完毕后十日内向上级工商行政管理机关报告执行结果。  **第十九条** 上级工商行政管理机关发现下级工商行政管理机关行政执法工作存在普遍性问题或者区域性风险，经工商行政管理机关负责人批准，可以向下级工商行政管理机关发出执法监督意见书，提出改进工作的意见和建议。  　　下级工商行政管理机关应当在执法监督意见书规定的期限内将有关情况书面报告上级工商行政管理机关。  **第二十条** 各级工商行政管理机关应当严格执行罚缴分离和收支两条线管理制度，严禁收费罚没收入同部门利益直接或者变相挂钩。  **第二十一条** 各级工商行政管理机关应当健全行政执法和刑事司法衔接机制，严格执行案件移送标准和程序，建立与公安机关、检察机关、审判机关信息共享、案情通报、案件移送制度。  **第二十二条** 下级工商行政管理机关的行政执法活动受到地方保护主义等情形干扰、干预的，可以向上一级工商行政管理机关报告。上一级工商行政管理机关应当予以协调，必要时可以采取向地方政府通报情况、督办、直接查处等方式予以处理。  **第二十三条** 工商行政管理执法证管理、行政处罚案件核审、听证、行政复议、行政赔偿、法治建设评价、行政执法评议考核、行政执法过错责任追究等执法监督方式，依照有关法律、法规、规章和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专项规定实施。  **第二十四条** 下级工商行政管理机关应当积极配合上级工商行政管理机关的执法监督工作，对不执行执法监督决定的，由上级工商行政管理机关视情节轻重给予通报批评、责令改正，并可以建议有权机关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相关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行政执法人员不执行执法监督决定的，由工商行政管理机关视情节轻重给予批评教育、通报批评、离岗培训、调离执法岗位，并依法给予行政处分。  **第二十五条** 省、自治区、直辖市工商行政管理机关可以根据本规定，结合当地实际，制定实施办法。  **第二十六条** 本规定自2015年12月1日起施行。1999年12月8日国家工商行政管理局令第92号公布的《工商行政管理机关执法监督暂行规定》同时废止。 |